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13

2021년 3월 5일 행정자치위워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 (찬성자 11명)

나. 발 의 일 : 2021년 1월 19일

다.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라. 상 정 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2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지방세법」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 목적 사항에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본 조례 중 「지방세기본법」의 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 세기본법」위임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 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조례 근거 법령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 2) 지방세법 상 주민세 관련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3) 「지방세기본법」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및 공동재 산세 전출금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 2. 16.~2. 2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완화를 목적으로 구「지방세법*」에 따라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본 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하는 제도임.
- * 구 지방세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제6조의2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6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제6조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20.]

- ** 본 규정 시행 2008.1.1., [서울특별시조례 제4577호, 2007.11.1. 일부개정·시행]
- 이후, 2011년에 「지방세법」이 3개의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2011.1.1.)되어, 관련 조례 체계도 마련된바 있음.

< 지방세 관계법 3법 분법(2011.1.1. 시행)에 따른 조례 제·개정 내역 >

상위법령			
	당초 (1개법)		분법* (2011.1.1.1. 시행)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지 방 세 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	지방세법
T	제 5장(괴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조례		
당초 (2개 조례)		개정 (2011.1.1. 시행)
시세조례	→	시세 기본 조례 (제정) 시세 조례 (전부개정)
시세 감면조례	→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
- ※ 이후, 「지방세징수법」또한 분법[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정] 되어 현행 4개의 지방세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분법과 동시에 재산세의 공동과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와 관련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 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지방세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 본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위임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나.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

- 1) 조례 목적규정에 「지방세법시행령」 추가 (안 제1조)
- 안 제1조는 현행 조례 근거 법령으로 '「지방세법」등'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을 추가 명시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 제12조에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지방 세법 시행령」(제85조의4)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바.

- 「지방세법 시행령」을 목적규정에 포함하여 명확한 근거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세법」등</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세법」 및</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u>「지방세법 시행령」</u> 에서 위임된 사항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지방세법」개정 사항 반영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당초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주민세 체계를 개편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개정(주민세 과세체계 정비) 내용 >

당초	개정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의 세세목	- 주민세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 분으로 단순화(3개 세세목)하고 납 기를 8월로 통일	
개 인 균 등 분 개인사업자	<u>개 인 분</u>	
법인	<u>사 업 소 분</u>	
재 산 분 종 업 원	종 업 원 분	

< 주민세 과세체계 정비 주요 내용 >

당 초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그드ㅂ	개인	1만원 內	
균등분 (8월)	개인사업자	5만원	
(02)	법인	5~50만원	
재 산 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8월)	<좌 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연면적 330㎡ 초랴 기본세액+250원/㎡
종업원분	<좌 동>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 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 정함.
 -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 3)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주민세	제5장 (현행과 같음)
제1절 <u>균등분</u>	제1절 <u>개인분</u>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율은 4,800원으로 한다.
1. 개인의 세율	

현 행	개	정	안
-----	---	---	---

- <u>가. 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u> 의 세율: 4,800원
- 나. 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 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u>재산</u> <u>분</u>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u>표준세</u> 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u>재산분</u>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 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 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u>사업</u> <u>소분</u>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u>각 호</u>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u>사업소분</u>의 납세의무 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 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특별시분 재산세 관련 조문 삭제 (안 제9장(안 제26조, 안 제27조))
- 안 제9장(안 제26조, 안 제27조)은 특별시분 재산세와 관련 규정에 대한 근거 법이 「지방세법」 분법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 (2011.1.1.)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위임 조례인 「서울 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임 법령 체계에 합당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재무국은 근거 법령 체계 개편 이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방치하였는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적합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4) 기타 (부칙)

- 부칙 안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면서, 안 제2조에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반영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였는바.
-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 시행일(2021.1.1.)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개정 조문의 시행 시기의 공백 기간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시기를 소급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개정조례안
부칙 <법률 제17769호, 2020.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시행한다. (생략)	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적용례) 제5장 제1절의 제목, 제8조, 제5장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	제2절의 제목,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제4조 (이하 생략)	분부터 적용한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13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1월 19일

발 의 자:한기영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경우, 김재형,

김태호,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추승우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지방세법」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 목적 사항에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본조례 중「지방세기본법」의 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및 교부방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위임 조례인「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근거 법령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 나. 지방세법 상 주민세 관련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안 제 9조, 안 제10조)

다. 「지방세기본법」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및 공동재산세 전 출금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등"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4,800원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각 호의 세율"로 한다. 제10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장(제26조 및 제27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5장 제1절의 제목, 제8조, 제5장 제2절의 제목,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쳙 했

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적으로 한다.

> 제5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800원

나. 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 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 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 제10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장 (현행과 같음) 제1절 개인분

분의 세율은 4,800원으로 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장 특별시분 재산세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 | <삭 제> 은「지방세기본법」제10조에 따 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 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 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 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 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 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 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 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 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